

제 403 호

1973. 9. 21.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61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훈 령

제 373 호 : 서울특별시민원서류처리
실의 회규정..... 3

◎ 공 고

제 177 호 : 도시계획 (학교종합시설) 사업
일부준공..... 5

◎ 사 령..... 5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019

규 칙

○ 서울특별시 훈령 제 373 호

서울특별시 민원서류처리심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73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 민원서류
처리심의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서류를 공정하고 정확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원서류처리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민원서류의 처리방안을 심의한다.

1. 계속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사항
2. 2개국인이 상해 관련이 있는 사항
3. 정책적인 해결이 필요하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시장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심의회의 실적을 거쳐 처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 조 (심의회학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의 소관에 따라 시 제 1부시장 또는 제 2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본청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그에게 지명하되 감사관과 심의대상업무의 소관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의를 대표한다.

제 5 조 (회의의 개최 및 의사) ① 심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p>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는 과반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p> <p>④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회의의 소집을 가름할 수 있다.</p> <p>제 6 조 (의결의 청구등) ①심의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국장 및 과장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내용의 실익이나 의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관계국장 및 과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관계되는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발언할 수 있다.</p> <p>제 7 조 (보고) ①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전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처리방안을 최우적으로 확정한다.</p> <p>제 8 조 (부의 및 심의절차) ①감사담당관은 심의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주관과장에게 심의회에 부의할 것을</p>	<p>통보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10부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요구서 2. 심의안건 <p>③감사담당관은 전항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p> <p>제 9 조 (간사) ①심의회 의 서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p> <p>②간사는 회의를 개회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p> <p>부 칙</p> <p>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공 고

사 령

◎ 서울특별시 공고제 177호

도시계획(학교종합시설)사업일부준공

- 1. 서울특별시고시제 122호(73.7.16)로 시행하기된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이 다음과 같이 일부 준공되었기 이를 공고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사업 집행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동 223의 17 필지

2. 사업명 : 중교등학교 종합시설사업

3.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우신학원 이사장 김 학원

4. 면 적 : 총시행면적 : 67,541㎡ 중 (28,356㎡ 준공)

5. 사업시행기간착수 : 1973. 7 준공예정일 : 1973.12.31(일부준공 73. 8. 22)

6. 준공도면 : (일부준공도면생략) 1973.9.13

서울특별시장

◎ 1973. 9. 19

정 복 구 지방행정수사 김 준 규 수태행정과파견(73.9.19-73.11.30

까지) 근무를 명한다

문 역 과 기 적 기 사 신 영 님 지방기록과파견 임한다.

2 호봉을 승급

상 정 과 근무를 명한다

남 부 영 관 서 총 팀 기 사 노 진 익 서울특별시 전업을 명한다

지 방 능 립 기 사 파 견 한

6 호봉을 급급

영 등 포 구 근무를 명한다

◎ 1973.9.20

마 도 구 지방행정서기 김 가

남 도 구 지방행정서기 이 준 동

동 대 구 지방행정서기 전 문 숙

성 복 구 지방행정서기보 황 환 숙

성 복 구 수 도 지방행정서기보 윤 경 숙

사 업 소

송 로 구 지방행정서기보 홍 준 수

수 도 사업소

용 산 구 지방행정서기보 박 연 숙

동 대 북 구 지방행정서기보 강 기 사

수 도 사업소

용 산 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미 영

용 신 구 지방행정서기 오 달 숙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각형숙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이영재
시민과 의견근무를 명함		종로구 수도사업소	정형숙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김재명	성동구 열동출장소	서영희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남혜자	중구	강형숙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노광자	나포구 지방조무수	이수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분선옥	중구 시민봉사실 근무를 명함	
종로구	이부배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권정자
종로구	김미자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이정순
종로구	박경자	동대문구	분애희
종로구	김원숙	동대문구	윤형숙
성동구	홍순정	동대문구	안형숙
종로구 시민봉사실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이경숙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이경자	동대문구	서계숙
중구	최경순	성북구 수도사업소	강북형
중구	김은혜	동대문구 시민봉사실 근무를 명함	
중구	강영자		
마포구 수도사업소	권순미		

성 동 구	지방행정 지서	이 중 심	도 봉 구	기 관 부 공무원	안 화 경
"	"	서 명 자	성 북 구	지방행정 지서	김 순 핵
"	"	김 형 애	"	"	이 길 자
"	"	김 부 가	도봉구시민봉사실근무물 명함.		
"	"	김 숙 정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지서	권 영 애
"	지방행정 지서	김 영 란	"	"	상 옥 규
"	민원보조원	박 기 순	"	지방행정 지서	손 영 수
동 대 문 구	지방행정 지서	시 옥 자	"	"	최 현 숙
성동구시민봉사실근무물 명함.			"	"	서 서 지
성 북 구	지방행정 지서	이 성 희	"	"	김 신 희
"	지방행정 지서	정 명 자	"	"	김 기 숙
"	"	김 연 순	성 북 구 수도사업소	"	이 청 자
"	"	김 유 생	서대문구시민봉사실근무물 명함.		
"	"	이 예 령	마 포 구	지방행정 지서	이 영 지
"	"	홍 명 자	"	"	이 명 순
"	"	박 해 숙	"	"	박 영 자
"	"	유 명 자	"	기 관 부 공무원	김 금 규
"	민원보조원	인 정 희	"	민원보조원	김 근 세
성북구시민봉사실근무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지서	김 삼 경
도 봉 구	지방행정 지서	박 수 자	서 대 문 구	"	오 정 숙
"	지방행정 지서	현 애 구	마포구시민봉사실근무물명함.		
"	"	최 영 남	용 산 구	지방행정 지서	유 수 문
"	"	정 은 애	"	"	

용 산 구	지 방 행 정 기	사 금 숙	관 약 구	지 방 행 정 기	이 형 식
"	지 방 행 정 기	김 영 자	"	"	박 필 숙
"	민원보조원	구 경 자	"	기 관 부	양 인 순
은 평 한 장 소	지 방 행 정 기	권 회 준	"	"	이 영 남
"	"	임 진 숙	"	"	권 명 자
동 대 문 구	"	유 병 금	관악구시민봉사실근무불명함.		
서 대 문 구	"	이 정 희	용 산 구 지 방 행 정 기		
도 봉 구	"	이 중 선	중구시민봉사실근무불명함.		
용산구시민봉사실근무불명함.					
영 등 포 구	지 방 행 정 기	강 운 자	© 1973.9.24.		
"	지 방 행 정 기	박 향 자	충 주 시 지 방 행 정 사		
"	"	신 영 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	"	신 명 순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	"	윤 옥 자	3호봉을 급함.		
"	"	최 경 옥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	"	김 유 성	© 1973.9.25.		
영등포시민봉사실근무불명함.					
관 약 구	지 방 행 정 기	김 남 희	천부이리시 지방토목		
"	지 방 행 정 기	신 영 자	주 도 과 기		
"	"	박 필 숙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	"	이 중 팀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	"		2호봉을 급함.		
"	"		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p>한국해양대학 건축기사 노택식</p> <p>서울특별시 건입을 명함.</p> <p>지방건축기사에 임함.</p> <p>5호봉을 급함.</p> <p>건축과근무를 명함.</p>	<p>충북유치원 지방농림 김준형</p> <p>서울특별시 건입을 명함.</p> <p>지방농림기원에 임함.</p> <p>4호봉을 급함.</p> <p>성북구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p>	
Empty space for signature and stamp	